

□□□ □□□□□ □□ □□ □□□□

예술인 고용보험과

가입 절차 알아보기

- 인천문화통신 3.0 -



 여수문화재단
Yeosu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문화로 잇고 채우는
동행도시연수



KEYWORD로 예술인고용보험 절차 알아보기

1. 예술인고용보험 가입대상 확인

2. 사업주 성립신고

3. 상호간 계약서 작성

4. 피보험자 신고

5. 보험료 납부 및 정산

6. 피보험자 상실 신고

7. 보험료 정산



'예술인고용보험'이란?

1. 예술인고용보험

예술인고용보험이란 예술가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와 실업예방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이며, 2020년 12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예술인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2. 가입대상

-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사람 (필수X)
- 만 65세 미만,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 문화예술용역 계약기간이 한달 미만 예술인도 해당
-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예술인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 예술인 경우, 50만원 미만이라도 가입 가능



그럼 예술인고용보험은 누가 신고할까요?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신고합니다.
사업주가 해당 예술인에 관한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예술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신고합니다.

3. 사업주 성립신고

예술인고용보험은 '사업주'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변동 또는 상실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사업주 성립신고' 를 진행합니다.



어떻게 신고하나요?

온라인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 (근로복지공단 방문) 으로 신고합니다.



사업주 성립 신고 후, 무엇을 해야할까요?

4. 피보험자(예술인) 신고

- 계약기간, 소득에 따라 예술인을 구분합니다.
 - ↪ 일반예술인: 계약기간 1개월 이상, 월평균 소득 50만원 이상
 - ↪ 단기예술인: 계약기간 1개월 미만, 월평균 소득과 상관 없이 가입
-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필수★**
- 온라인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근로복지공단 방문) 으로 신고합니다.
 - ↪ 단기예술인 경우, 전월 <노무제공내용 확인>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 ↪ 일반예술인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계약일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보험료 계산과 납부는 어떻게 할까요?

보험료 산정

$$\text{보험료} = \text{보수액} \times 1.6\% (\text{보험요율})$$
$$\text{월평균보험료} = \text{월평균보수액} \times 1.6\%$$

* 월평균보수액 = 계약금액 \times 80% \div 계약기간

잠시만요! 월평균보수가 80만원보다 낮다면?

'기준보수 80만원 제도' 적용

→ 월평균보수액이 80만원보다 낮은 경우,
계산된 금액이 아닌 **80만원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하여
최소한의 구직급여를 보장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계산된 보험료는 어떻게 납부할까요?

5. 보험료 납부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된 고지서를 온라인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 (근로복지공단 방문)으로 납부합니다.



계약 종료, 보험료 납부 이후에는?

상실신고로 아름다운 이별을 진행 (안녕~)



6.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사업주가 고용한 예술인과의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마지막으로,

7. 보험료 정산하기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완료 후, 계약서 근거로
'정확한 보험료가 납부되었는가' 확인 및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상실 신고된 피보험자의 정산분을 확인합니다.

환급액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환급액이 사업자 통장으로 입금되면
해당 예술인에게 개별 지급

납부액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이 발급한 고지서를
해당 예술인이 개별 납부



1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입니다.
저도 예술인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술인고용보험 요건이 충족되면 의무적으로
가입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계약서가 없으면 예술인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나요?

예술인고용보험의 적용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체결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계약 여부의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서면 계약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간이 계약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계약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 가입 시 '**자격취득일(노무제공개시일)**'과 '**계약기간**' 및 '**월평균보수신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체결 시 노무제공기간을 특정할 수 있는 계약기간과 해당기간의 보수 지급액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예술인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사업주가 계약서 작성과 보험가입을 회피합니다. 관련 처벌 법규가 있나요?

「예술인 복지법」 제4조 4에 의거하여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술인고용보험 문의

2020년 12월부터 시행된 예술인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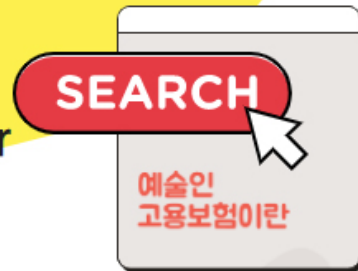
-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예술인고용보험 전담팀 02-2097-9250~62



온라인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술인 고용보험 누리집

<http://artinsure.kawf.kr>



카드뉴스 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근로복지공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